

의안번호	2209258
의 퇴 인	조은희의원
회 답 일	2025.4.23.
추계번호	25D1813
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 (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)·제10조의3(군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)·제13조의2(안전교육의 통합 실시) 신설	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,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소속 공무원 등, 군인 및 민방위대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0조제3항(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) 신설	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2 (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)·제10조의3(군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)·제13조의2(안전교육의 통합 실시) 신설	• 미대상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정을 수반하지 않음
2	안 제20조제3항(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20조제3항 신설)

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됨
 - －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부처별로 분산 제공되는 대국민 안전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‘국민 안전교육 플랫폼(<http://kasem.safekorea.go.kr>)’을 구축하여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음
 - －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인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하여 구축·운영하겠다는 의견
 - － 따라서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한 ISP,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다만,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한 기존 시스템의 확대 범위, 구매가 필요한 시스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량, 장비 및 프로그램별 평균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현재 운영 중인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생애주기를 영유아, 아동기, 청소년기, 성인기, 노년기 5대로 구분하고 생활, 교통, 재난, 범죄, 보건 등 5대 분야 1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안전교육 통합자료를 제공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